



—
기조발제문
—

The title '기조발제문' is centered on the page. It is flanked by decorative elements: a small branch with several leaves to the left and a single leaf to the right. Two horizontal lines are positioned above and below the text, framing it.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사회 발전

셰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대표

제가 한국을 알게 된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한국이 유산과 그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전통적인 표현 양식을 보존하고, 이들의 발전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대적 창작을 장려해 온 방식에 언제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항상 한국을 예로 듭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프랑스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김정옥 교수님¹⁾과 파리의 한국 문화센터의 담당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1974년 이래로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봉산탈춤, 판소리, 승무, 살풀이, 씻김굿, 궁중무용, 가곡, 사물놀이, 다양한 종류의 인형극과 자유극단을 포함한 여러 극단의 공연을 수십 차례 펼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알지 못했던 관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중 일부 주제는 여러분들이 발표에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

1)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상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개념이 20세기 초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1987년에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를 담은 '브룬틀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제정 중이었던 문화 다양성을 다루는 다른 협약에서 토대가 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협약은 즉각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약의 목표와 이행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문화 다양성은 세상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함으로써 공동체, 개인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관심사인 협약,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맨 마지막에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단 한 번 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상 기존 국제 인권 기구의 목적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집단, 개인 간의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과 합치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69개 운영지침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은 겨우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기금 제73조는 “협약의 원칙과 목적, 현행 국제 인권 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건 및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상호 존중에 필수적인 요건들과 상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어떠한 기부도 수락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장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상징 도안 사용에 관한 제 111조는 “미디어가 무형문화유산의 미적 또는 오락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및 분쟁 예방의 수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이라는 용어는 두 번 더 언급됩니다(운영지침 109(e)와 123(f)).

협약과 협약의 운영지침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협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던져야 할 질문

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존재하며, 해당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브룬틀란드 보고서의 정의에 덧붙여, 2012년 프랑스규격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프랑스 공식 표준화 기구이자 국제 표준화 기구의 회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기능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는” 경우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 인간과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며 “인간의 경우, 해당 개념은 필수적인 필요, 즉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한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적 조건이 충족되는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이 필수적인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볼 때,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우선 논의의 대상인 무형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유행처럼 되었고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거에 다른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대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용어에서 정의하였듯이, 이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인류학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협약의 틀 안에 일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수립된 규범의 관리를 받는 접근법으로 협약은 이 규범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2003년 협약에서 국제 사회가 채택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무형문화유산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선수가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축구선수입니다. 무형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2003년 협약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언제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협약 작성 당시에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 훨씬 더 첨예한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바로 ‘공동체, 단체 및 개인 간의 상호 존중’입니다. 우주가 생성된 이래로, 역사는 개인, 단체, 부족, 공동체, 국가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었으며, 의례와 연행 및 문학 등 개인과 단체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양식은 투쟁을 통

해 풍부해졌으며 바로 그 투쟁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투쟁은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모두가 협약의 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가 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정부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표현 양식 모두가 불과 몇 년 전에 생겨난 개념과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 양식이 만들어진 당시, 정해진 표현 양식대로 행하는 민족이 미래를 위해 오직 직관으로만 알 수 있는 생태계 균형을 보존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크리스마스 풍습이라는 평범한 예를 들어봅시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집안을 장식하고 불을 밝히고 며칠 후에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통은 매년 수 백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이러한 전통에 우려를 표명한 적 없었지만, 최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연산 소나무를 인조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통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있어, 주목할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크리스마스 관습을 위해 나무를 심으면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서 나온 생산물은 전통적인 문화적 풍습과 관련된 악기와 물건, 옷감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행위 주체자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 풍습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거나 혹은 민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필요가 없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어 2003년 협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본 발표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협약의 운영지침 본문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실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당시로써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부 간 협약에 도입하는 일 자체가 이미 최초였으며, 그러한 면에서 사고의 진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긴요하며 불가피한 개념을 단 한 차례 언급한 것만으로도 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개념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보호라는 협약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한 이는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약의 가시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표목록 등재 있

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대표목록 등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끊임없이 반대해 왔는데, 이는 협약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주제이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몇몇 학술적, 과학적 연구 계획이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